

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366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년 3월 5일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조례상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, 「학교안전법」에서 학교장 또는 보조인력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등을 안내하거나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안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“안내하여야 한다” 를 “안내할 수 있다” 로 수정함(안 제10조제2항).
- “부여하여야 한다” 를 “부여할 수 있다” 로 수정함(안 제10조제3항).
- “준수하여야 한다” 를 “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 로 수정함(안 제10조제4항)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안내하여야 한다”를 “안내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부여하여야 한다”를 “부여할 수 있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준수하여야 한다”를 “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<신설></p>	<p>제10조(보조인력 배치) ① 학교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(이하 “보조인력”이라 한다)을 배치할 수 있다.</p> <p>② 학교장은 보조인력에게 현장체험학습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을 <u>안내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학교장은 보조인력에게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<u>부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제1항에 따라 배치된 보조인력은 인솔교사의 안내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의 운영을 보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을 <u>준수하여야 한다.</u></p>	<p>④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안내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부여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

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·방법 등에 관한 사항

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,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보조인력 배치) ① 학교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(이하 “보조인력”이라 한다)을 배치할 수 있다.

② 학교장은 보조인력에게 현장체험학습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을 안내할 수 있다.

③ 학교장은 보조인력에게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배치된 보조인력은 인솔교사의 안내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의 운영을 보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이 조례는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) ① (생략)</p> <p>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6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5조(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·방법 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7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p> <p>제10조(보조인력 배치) ① <u>학교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(이하 “보조인력”이라 한다)을 배치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학교장은 보조인력에게 현장체험학습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을 안내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학교장은 보조인력에게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<u>제1항에 따라 배치된 보조인력은 인솔교사의 안내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의 운영을 보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10조 · 제11조 (생략)</p>	<p>제11조 · 제12조 (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)</p>